

의안번호	2126633
의 퇴 인	김진표의원
회 답 일	2024. 03. 26.
추 계 번호	24D0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민공론절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3억 2,400만원(연평균 6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	48	120	-	-	168	34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민공론절차 실시 등 (안 제23조의2제9항 신설)	-	-	3,156	-	-	3,156	631
합계	-	48	3,276	-	-	3,324	665

- 주: 1.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1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사사례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추계
2.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민공론절차 실시 등(안 제23조의2제9항 신설)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유사사례인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집행 총액을 활용하여 추계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 제1항 신설(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선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운영	의무규정
2	안 제23조의2 제9항 신설(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민공론절차(국회의원선거제도의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전문가의 실증적 분석과 조사 등에 따른 활동을 거쳐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의2 제1항 신설(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	
2	안 제23조의2 제9항 신설(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28년 4월 12일의 18개월 전인 2026년 10월 12일부터 9개월 전인 2027년 7월 11일까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추계
 -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국회의원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로 운영기간을 규정
 - 본 추계에서는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개월로 가정
 - 동 개정안 제23조의3제9항에서 국가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확정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선거제도개선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되고 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지원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개정안의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와 유사
-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에 대한 국민공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
 - 유사사례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시점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함에 따라 운영기간의 감소로 재정지출의 감소가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3.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4%	2.4%	2.2%	2.2%	2.1%	2.1%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설치·운영(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4월 12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약 10개월(2026.10.12.~2027.7.11.) 동안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1개월 운영비는 2023년 예산안 기준 1,45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1년 예산은 1억 7,400만원(일반수용비 8,700만원, 국내여비 2,700만원, 임차료 2,200만원 등)
- 추계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1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개월 운영비 (A, 백만원)	15	16	16	16	17	—
연도별 운영기간(B, 월)	—	3	7.5	—	—	10.5
추가재정소요(=A×B, 백만원)	—	48	120	—	—	168

나.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민공론절차 실시 등(안 제23조의2제9항 신설)

-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안에 대한 국민공론절차와 전문가의 실증적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국민공론절차와 전문가의 실증적 분석과 조사를 2027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
 - 유사사례인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8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은 3개월 가량으로 유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비는 평균 26억 5,400만원(2018년 기준)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471명 위원, 2017년 기준 32억 2,700만원 집행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490명 위원, 2018년 기준 18억 3,200만원 집행
 - 전문가의 실증적 분석과 조사는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사례(선거·정치관계 법제지원 관련 연구용역)를 활용
 - 2024년 기준 2,000만원에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국민공론절차와 전문가의 실증적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1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국민공론절차 실시 등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국민공론절차	-	-	3,135	-	-	3,135
전문가 실증적 분석 등	-	-	21	-	-	21
합계	-	-	3,156	-	-	3,156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민공론절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3억 2,400만원(연평균 6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 설치·운영	-	48	120	-	-	168	34
국회의원선거제도 국민공론절차 등	-	-	3,156	-	-	3,156	631
합계	-	48	3,276	-	-	3,324	665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28년 4월 12일의 18개월 전인 2026년 10월 12일부터 9개월 전인 2027년 7월 11일까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